

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792
----------	-----

99. 6. 4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의회 (본회의 및 상임위원회)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현직제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것임.

2. 주요내용

- 본 조례 제2조(범위)
 - 제2호중 “보조기관중 실·국·담당관·실·과장급”을 “실·국·담당관과장급”으로 하고
 - 제3호중 하부행정기관의 “소속 행정기관장”을 “소속행정기관장 및 과장급”으로 소속행정기관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출석케 하였으며
 - 제4호중 “소속행정기관”을 “법제108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”으로 하고 “실·과장”을 “담당관·과장”으로 하는 것으로써

3. 검토의견

-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및 지방행정기구 정원등에 관한 기준(대통령령)에 따라 성남시 행정조직 조례의 제정 및 개정으로 현 직제 및 직위에 부합되도록하며
-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에 차이 (4, 5급)가 있어 출석 공무원의 직급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현행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.